

한국과 ICC 간 중재비용에 관한 비교 분석*

하 총 룡**

<목 차>

- I. 서론
- II. 중재의 비용구조
- III. 중재비용의 분담
- IV. 중재비용의 예납
- V. 한국과 ICC 간 중재비용의 비교
- VI. 결론

I. 서론

국제상사중재를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상대적 비용의 저렴성이 이 분쟁해결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국제상사중재방식이 반드시 비용절감적 분쟁해결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 본 논문은 2000년 4월 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며 당시 토론자로 참석하신 이상호 교수님, 우성구 교수님, 대한상사중재원 이주원 위원님의 건설적인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조교수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¹⁾ 즉 중재에 있어서는 소송에서와 같이 중재인의 업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금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비용에 대해서는 오직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재비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가 아니라 투입된 총비용이 제 가치를 다 발휘했느냐 일 것이다. 소송보다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할 지라도 중재에 의해서 상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장래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중재가 제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비용에 관한 규정은 중재신청의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이며 정기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상황의 변화 요인 중의 하나인 물가의 변동²⁾은 중재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비용의 조정을 불가피 하게 한다. 또한 중재신청인은 어떤 분쟁사안에서 신청할 중재절차에 총비용을 미리 추정해 봄으로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해 분쟁사안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승소의 가능성이나 거래관계의 경직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경영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서면 오히려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재의 우리나라와 ICC중재에 있어서 비용구조를 파악해보는 것은 분쟁당사자에게 중재절차의 개시에 대한 손익분석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상사중재에 있어서 한국과 ICC중재의 비용구조가 어떠한가를 파악해보고, 이러한 각종의 비용요소들이 당사자간에 어떻게 분배되는 가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중재비용은 어떻게 예납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예납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과 ICC중재에 있어서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중재의 손익분석 뿐 아니라 실제의 무역거래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의 선택과 관련하여 무역계약의 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중재의 비용구조

중재비용은 크게 나누어 중재절차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대분하여 볼 수 있다. 중재절차상의 비용이란 협의의 중재비용으로서 중재당사자가 중재절차의 개시 및 진행을 위하여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이 예납하

1)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Law and Practices of Commercial Arbitration 248-255, 1991; Michael J. Mustill and Stewart C. Boyd,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394-403, 1989.

2) 물가의 변동이라고 할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물가의 상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록하고 있다.³⁾ 당사자비용이란 중재당사자가 중재관리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당사자 본인이 당해 중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중재비용 중 중재절차상의 비용은 중재규칙과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중재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심문 종결 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당사자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의 부담약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⁴⁾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와 ICC중재규칙상에서의 중재절차상의 비용구조와 당사자비용구조에 관하여 각각 고찰하기로 한다.

1. 한국

1) 중재절차상의 비용

중재절차상의 비용이란 협의의 중재비용으로서 중재당사자가 중재절차의 개시 및 진행을 위하여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이 우선 중재사무국에 예납하는 비용이다.⁵⁾ 중재절차상의 비용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의 상사중재규칙 제61조(중재비용), 제62조(요금), 제63조(경비), 제64조(수당), 제65조(예납방법)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사중재규칙상의 중재비용(제61조)은 협의의 중재비용으로서 중재절차상의 비용을 의미한다.⁶⁾ 이 규칙에 따르면 중재비용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중재판정부의 결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균등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적용환율의 문제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중재신청접수일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⁷⁾

(1) 요금

요금은 관리요금과 심문기일변경요금으로 구분한다.⁸⁾ 관리요금의 산출방법은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중재신청금액에 근거하여⁹⁾ 상사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요금표¹⁰⁾에 따라 계산한다. 한편, 관리요금이 중재신청금액의 변경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과하지만,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단 중재판정부의 직권으

3) 우리나라의 상사중재규칙 제9장 중재비용.

4) 이순우, 상사중재론, 법경사, p.97, 1999.

5) 신한동, 상사분쟁과 해결, 신영사, p. 102, 1999.

6)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9장 참조.

7)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제15조.

8)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2조.

9)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제4조(중재신청금액의 산정) 및 부표 1(중재신청금액산정기준).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에 중재신청금액의 산정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만약에 중재신청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신청항목이 신청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사중재규칙 요금표상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의 관리요금과 신청금액이 있는 신청항목의 해당 관리요금을 합산하여 중재비용을 산출한다.

10)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부표 참조.

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¹¹⁾

(2) 경비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상의 경비란 중재인 및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¹²⁾ 여기서 규정되지 못한 여타의 경비는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및 상사중재원의 제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다.¹³⁾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경비는 앞에서 언급한 요금과 같이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커진다고는 할 수 없어도 중재사안의 복잡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커지는 가변비용적 성격을 띠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당

중재의 신청인은 중재원이 정하는 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하며¹⁴⁾, 신청금액 별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¹⁵⁾, 판정문을 작성하는 단독 또는 의장중재인에게는 별도로 판정문 작성수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에서 중재인수당은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재원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중재인 1인당 100,000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¹⁶⁾

2) 당사자비용

당사자비용이란 중재당사자가 당해 중재사안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중에서 중재관리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당사자 본인이 지출한 개인적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변호사보수 등을 말한다. 중재절차상의 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비용과는 달리 상사중재규칙과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중재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심문종결 후 비용정산의 대상이 되며 사전에 전체 소요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개인이 지출한 당사자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게 되는데, 비용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당사자비용의 분담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고 있다.

2. ICC

ICC 중재에서도 역시 중재비용을 협의의 중재비용(또는 중재절차상의 비용: Costs of

11)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2조.

12) 상사중재규칙, 제63조.

13)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제13조. 동 규정의 2호과 3호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두 시 마다 50,000원의 경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와 숙식비등을 추가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인의 경우에는 일당 100,000원, 수행하는 사무국의 직원일 경우에는 일당 30,000원의 경비와 실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및 숙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상사중재규칙 제64조.

15)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제12조.

16) 이순우, 상사중재론, 법경사, p.97, 1998.

the Tribunal)과 당사자비용(Costs of the Parties)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⁷⁾ ICC의 개정된 중재 규칙에서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전의 중재비용규정과 비교할 때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변화는 신청금액이¹⁸⁾ 작은 경우에 있어서의 중재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승한 점이다. 즉, 신청금액이 미화\$50,000이하인 경우에, 개정전의 최저중재인수수료는 미화\$2,000인데 반해 개정 후에는 최저중재인수수료가 미화\$2,500로써 25%인상되었고, 최고수수료는 개정전의 신청금액의 15%에서 개정 후에는 분쟁금액의 17%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청금액이 커질수록 개정후의 최저수수료율과 최고수수료율이 개정 전 보다 약간씩 낮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¹⁹⁾ 이 절에서는 개정된(1998) IC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절차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중재절차상의 비용(또는 중재원 비용)

중재절차상의 비용의 구성에 관하여 IC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비용(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관리비용(administrative costs), 전문가비용(fees and expenses of any neutral experts)으로 세분하고 있다.²⁰⁾

(1) 중재인비용(arbitrators' fee and expenses)

ICC 중재규칙상에 있어서 중재인 비용은 중재인수수료와 중재인경비로 나뉜다.²¹⁾ 중재인 수수료와²²⁾ 중재인경비는 ICC중재원에 의하여 결정될 뿐이며 당사자와 중재인간에 있어서 수수료에 관한 특약은 무효이다.²³⁾ 이러한 수수료의 특약에 관한 무효 원칙은 당해 중재사안에서 중재인에게 금전적 수수관계를 ICC중재원에 한정시킴으로써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청탁성 금전수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중재인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ICC중재원은 중재인수수료 환산표 상에 나타난 신청금액별 중재인수수료의 상·하한선의 범위 내에서 중재인의 성실성, 전체적인 심리에 소요되

17) Christian Buhning-Uhle,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p.113-114, 1998.

18) ICC의 관리비용이나 중재인수수료는 신청금액에 근거하여 산정 된다. 신청금액으로 간주되는 항목에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모든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피신청인의 반대신청금액 모두를 포함한다. 중재비용이나 이자에 대한 지급청구는 신청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신청인의 청구가 중재신청은 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한 비용의 배상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신청금액에 포함시킨다. Michael Buhler, Costs in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 p.123.

19)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4. The 1993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Rules and Procedures, APPENDIX III: SCHEDULE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STS, Art. 5.

20)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icle 31(1).

21)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2.

22)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4, 중재인수수료 환산표(In US Dollars), 신청금액 이 \$50,000 이하인 경우에 중재인수수료는 최소수수료 \$2,500이며 최대수수료는 신청금액 의17%까지 부과, 신청금액 이 \$50,001이상 \$100,000이하인 경우에 최소수수료는 \$2,500에 \$50,000의 초과금액의 2%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수수료는 \$8,500(\$50,000×17%)에 \$50,000의 초과금액의 11%를 더한 금액이다. \$100,001이상의 중재인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중재인수수료 환산표 참조.

23)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2: Clause 4.

는 예상시간, 심리의 신속성,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중재인수수료를 결정한다.²⁴⁾ 현재 ICC중재원 홈페이지에서는 중재비용계산시스템(Arbitration Cost Calculator)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상 중재인수(Number of Arbitrator)와 신청금액(Amount in Dispute)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중재인수수료와 관리비용의 근사치를 추정해 볼 수 있다.²⁵⁾ 그러나 여기서 제공하는 중재인수수료 및 관리비용에 대한 근사치는 앞에서 언급한 예상소요시간 및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중재수수료 및 관리비용 환산표상에 나타난 최대·최소 및 평균치만을 계산한 금액이 제시되고 있다.

ICC 중재규칙상의 중재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중재인수수료와 관련한 어떠한 부수적인 세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ICC의 중재인수수료 환산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양당사자들은 중재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에 중재인이 당사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인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가 차감 됨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수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의 중재인수수료와 관련한 세금의 부과는 관할지국가의 조세법에 따라서 정해지는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수수료총액은 국가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²⁷⁾

중재인경비는 여행을 위한 제비용 및 중재심문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여타의 비용을 말하며 지급청구를 위해서는 중재인은 지출영수증을 첨부한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ICC중재원의 중재인경비에 대한 계산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일률적으로 일당 US\$400로 지급하는 방식과 최대 상한선을 US\$500로 정한 뒤 영수증이 첨부된 청구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⁸⁾ 앞에서 언급된 중재인수수료와 비교할 때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그 규모 면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리비용(administrative costs)

관리비용에 관하여는 ICC중재규칙 제31조와 부록의 제2조 및 4조에서 관리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환산표의 적용시기 및 환산율을 규정하고 있다.²⁹⁾ ICC중재원에서 관리비용환산율의 적용시기를 중재심문의 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비환산율이 변동하는 경우에 시비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관리비용이란 당해 중재사안을 담당하는 ICC중재

24)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2: Clause 2.

25)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http://www.iccwbo.org/court/english/cost_calculator.

26)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2: Clause 9.

27) Buhler, Michael, Costs in ICC Arbitration: A Practitioner's View, 2,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16, 1992.

28) Redfern &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52-254, 1991.

29) The ICC Arbitration Rules: Article 31; APPENDIX III: Article 2 and 4.

원의 활동을 위하여 충당되는 비용을 말하며 중재인수수료와 중재인경비로 구분된다.³⁰⁾ 여기서의 ICC중재원의 활동이란 중재인의 업무상 발생한 비용, 중재서기의 보수와 경비 및 당해 중재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부수업무³¹⁾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³²⁾ 관리비용 역시 중재인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와 같이 환산표에 의하여 추정함으로 비교적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관리비용과 중재인수수료는 그 최대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중재인수수료의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미화 10억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백분율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중재인수수료는 신청금액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관리비용의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미화8천만달러 이상이면 관리비가 미화7만5천 달러로서 고정율이 적용된다.³³⁾ 이는 중재절차상의 관리비용은 성격상 신청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 이상은 비용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ICC중재원 자체의 고정비용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 전문가비용(fees and expenses of any neutral experts)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예상전문가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³⁴⁾ 전문가비용도 앞에서 언급된 중재인비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수수료와 전문가경비로 이분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전문가수수료와 중재인수수료는 그 결정기관에 있어 차이가 나는데 전자의 경우는 중재판정에 의해서 결정되며 후자는 중재원에서 제시한 환산표에 따라 계산된다. 중재인비용의 산정에서와는 달리 중재판정부가 전문가비용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문가의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중재판정부의 고유의 권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는 전문가비용 산정에서 배제되어지는데, 이는 당사자가 뇌물성의 과다 수수료나 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2) 당사자비용(Costs of the Parties)

ICC중재규칙상의 당사자비용은 당해 중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지불하는 ‘합리적인(reasonable)’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⁵⁾ 여기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비용은 당해 중재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판정을 각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30) ICC중재원은 관리비용을 부록에 나타난 환산표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lump sum) 징수하고 있으나,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나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경우에는 중재인수수료와 중재인경비를 따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있다.

31) 부수업무에는 심문장소시설비, 통역비, 제 증명서의 발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32) Buhning-Uhle, Christian,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p114, 1998.

33)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4.

34)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PPENDIX III, Article 1: Clause 11.

35)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icle 31(1).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³⁶⁾

당사자비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들은 모든 중재사건에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비용 중에서도 변호사나 전문가의 수수료는 소송부대비용이나 간접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³⁷⁾ 실제로 중재사안에서 변호사나 전문가는 사건의 조사, 분석, 보고에 이르는 방대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수수료가 당사자비용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중재비용의 분담(결정)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ICC의 중재법원에서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의 비용분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³⁸⁾ 한국과 ICC의 중재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판정요지의 첨부이 요구되고 있지만 중재비용분담의 결정에 관한 이유는 중재판정부가 밝힐 의무가 없다.³⁹⁾ 중재절차상의 비용은 한국이나 ICC의 중재의 경우에 당사자의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비용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중재비용에 소요된 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당사자 간 중재비용의 부담 비율에 관한 결정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비용의 분담의 결정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방식과 요인들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중재의 비용구조 즉 중재절차

36) 대체로 당사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당사자들은 중재관할지에서의 법률 자문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비용을 변호사비용이라 한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수수료와 변호사경비로 구성되는데 변호사수수료의 경우는 대부분 투입시간에 비례해서 결정되며 때때로 사건의 난이도나 신청금액의 액수를 고려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둘째, 당사자들이 당해 중재사안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지급하는 비용을 전문가비용이라 한다. 셋째, 일방의 당사자가 채택하는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여행경비나 기타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당사자가 증거의 확보 등을 위하여 소송부대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다섯째, 당해 중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출된 “간접비용(indirect costs)”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간접비용에는 社内 변호사에 의해 지출된 비용 뿐 아니라 중재에 투입된 인력의 기회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분쟁의 본질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economic costs)이 있다. 이는 중재를 통하여 얻고자하는 당사자의 이익 중에서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잃게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어느 당사자의 경제적 비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점에서 제로섬게임(zero-sum-game)의 성격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Buhning-Uhle, Christian,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pp.114-115, 1998.

37) Craig, W., W. Park and J. Paulsson, *Annotated Guide to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OCEANA PUBLICATIONS, IN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171. 1998.

38) 한국 상사중재규칙, 제61조.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31.

39) 한국의 중재법은 판정요지의 작성을 이전부터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중재법 제32조), 개정전의 ICC 중재규칙(The 1975 ICC Rules)의 경우는 중재판정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개정된 ICC중재규칙(The 1998 ICC Rules)는 중재판정이유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판정의 명료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구분하여 ICC와 한국에서의 중재비용분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한국

우리 나라의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느 일방의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의 부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상사중재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⁴¹⁾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중재비용은 당사자비용을 제외한 중재절차상의 비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비용은 한 당사자가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기 위하여 받은 모든 법률서비스를 포함하는 자의적 성격이 매우 강한 비용으로서 그 청구에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개별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방식으로서 당사자간에 양분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 중재절차상의 비용

중재절차상의 비용은 정산의 대상이 되고, 심문이 종결되고 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 사무국에서는 정산서를 작성하고 판정문과 정산서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한다. 예를 들면,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판정주문이 내려지면 이미 예납된 중재비용의 소요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사무국에서 신청인에게 반환하며,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판정금액과 함께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하게 된다.⁴²⁾

우리 나라에서는 중재비용을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함으로써, 중재절차상비용의 부담비율의 결정에 있어서 판정결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원칙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더욱 중요성을 부가하고, 선의의 당사자로부터 중재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의지를 고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재절차상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중재규칙이나 사무처리규정 상의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어지지만, 그 분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은 중재판정부가 가진다. 따라서 중재절차상의 비용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에서 중재비용의 총액 및 정산을 담당하고, 중재판정부는 다만 이에 대한 부담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예납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할 경우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지게된다. 또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주문이 있기 전에 중재신청을 철회할 경우도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중재비용의 책임을 지게된다. 즉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40) 한국 상사중재규칙 제61조.

41) 한국 상사중재규칙 제 61조.

42) 이순우, 상사중재론, p.112, 1998.

중재판정부의 판정주문이 내려진 이후라야 한다.

2) 당사자비용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당사자비용이란 중재원에 납부하는 비용이외로 중재당사자가 지출한 중재비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변호사의 법률자문비용을 들 수 있다. 당해 중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대응전략에 관하여 어떤 수준의 법률자문을 받던지 그것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어떤 당사자이던지 간에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고가의 법률자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비용이란 해당 중재사안에서의 일방의 승리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비용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중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⁴³⁾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경우까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증인이나 감정인의 소요경비의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비용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중재판정 이후에 정산의 대상이 된다.⁴⁴⁾ 또한 중재원에서 청구하는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등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예납하고 중재판정 이후에 정산의 대상이 된다.⁴⁵⁾ 이와 같은 중재비용은 모두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는 투자비용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으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객관적 제3자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결과가 중재비용의 부담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ICC

ICC의 중재에서도 우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비율을 결정한다.⁴⁶⁾ 즉, 중간판정이나 신청건의 일부분에 대한 중재판정에서는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다. ICC의 중재규칙은 어느 당사자가 중재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불명확한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중재판정부의 부담비율의 결정에 포괄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⁴⁷⁾ 이렇듯 ICC의 중재에서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은 특정 중재사안에서 중재비용이 어떤 비율로 분할되어질 것인 가를 예측하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중재판정에 의하여 중재비용이 분할

43) 여기서 의미하는 필수적이라 함은 어떤 당사자가 승소를 위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재비용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재판정부가 판단에 의해 오직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44) 상사중재규칙, 제63조.

45) 상사중재규칙, 제63조.

46)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 31(3).

47) Michael Buhler, Costs in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 n. p140, 1992.

된 경우에도 분할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중재절차상의 비용

ICC 중재에 있어서 중재절차상의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재판정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⁴⁸⁾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중재비용의 분배는 일방의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50대50으로 반분하거나, 또는 비례적 배분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⁴⁹⁾ 일반적으로 중재판정에서 승소하는 중재신청인이 패소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중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의 중재판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⁵⁰⁾ 이렇듯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설득력이 없다는 중재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모든 중재비용을 신청인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반대인 경우 즉 승소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중재비용을 적정수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지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어떤 중재에서 어떠한 당사자도 확실히 자신의 입지를 밝혀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본 건에 대한 인정 비율과 같은 비율로 중재비용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긴⁵¹⁾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⁵²⁾

또한, 중재비용의 분담은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한다. 예로서 고의로 어떤 중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중재절차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중재비용을 분담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⁵³⁾

2) 당사자비용

당사자비용 역시 중재절차상의 비용과 같이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특정 당사자는 중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거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비용 중에서도 특정비용 즉 증인의 경비, 통역비, 번역비 등은

48) Michael Buhler, Costs in ICC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 n. p.140.

49)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 31, AAA Rules, Art. 33,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t. 39.

50) ICC Case N. 3099, 3100(1979). Year Book Commercial Arbitration, 87, 95 (1982). 이 사례들에서는 실제적으로 신청인의 법률비용과 중재비용이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51) 당사자들이 각자의 중재비용을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ICC의 중재판정사례가 있다. "Each party both succeeded and failed in part of its claim, therefore is awarded a 50/50 allocation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fixed at US\$393,234." ICC Case N's 2977, 2978 and 3033(1978),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133 (1981).

52) 신청인이 신청금액 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보상받은 ICC 중재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당해 사건의 중재비용은 분담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80%를 부담케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20%를 부담케 함으로써 본 건에 대한 중재결과와 사뭇 다른 중재비용에 관한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ICC Case N. 2930(1982), 9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111, 123-24 (1984). 또 다른 ICC의 중재사례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하였지만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2/5, 피신청인에게는 3/5의 비율로 분담케 함으로써 본 건의 판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ICC Case N. 3779(1981), 9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124(1984).

53) 어떤 ICC 중재사례에서는 계약상에 나타난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재판정부는 공정성에 의거하여 각 당사자는 각자의 법률비용을 스스로 부담케 하였으며 중재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통례다.⁵⁴⁾ 만약에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중재비용이 객관적인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요되었을 경우에는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당사자비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방의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려지게 하기 위하여 수용되어진 전략적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ICC의 중재에서 중재절차상의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결정되어 진다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비용의 경우에는 중재판정과는 별도로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⁵⁵⁾ 어떤 중재 사안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 및 반대신청에서 양자가 전략적으로 소모한 법률 및 제 경비의 추정하기 어렵고 상호 격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재심판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비용을 보상하게 한다면 중재판정을 유리하게 받은 당사자가 자신이 전략적으로 사용한 중재비용까지 패소한 당사자 측에 무리하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비용 분담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방식은 각자 부담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각자 부담방식이 채택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⁵⁶⁾ 즉 신청인의 신청으로 말미암아 중재절차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이 대응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출의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음으로 간주되어 피신청인의 당사자비용 중 어느 정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법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일반적인 부담원칙과 관련하여 중재인들은 때때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한 당사자의 법률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패소의 충격에다 모욕감까지 더하게 한다는 견지에서 꺼려한다는 시각이 있다.⁵⁷⁾ 이러한 각자 부담을 주장하는 시각의 논거는 어떤 중재 사건에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모든 행위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당사자부담의 논리에 더욱 무게를 두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의 법률비용이란 앞에서 언급된 전략적 법률비용 즉 당해 중재사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된 중재비용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중재비용 중 당사자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더하여 중재인의 국적이나 중재인의 문화적인 배경도 이러한 당사자비용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에는 중재법 상에 명시적으로

54) Michael Buhler, Costs in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 n. p.142 (1992).

55) ICC Case N. 3267(1984), 12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87(1987).

56) Michael Buhler, Const in ICC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 3, N. p.143 (1992).

57) Craig, W. Laurence et. 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407-408, 1990.

당사자비용의 분할을 언급하고 중재인도 이에 따르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당사자비용은 대체로 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⁵⁸⁾

IV. 중재비용의 예납

대부분의 중재기관은 중재절차상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중재사무국에 소정의 중재비용을 예납하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중재비용의 예납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한국과 ICC 간에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1. 한국

중재절차상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중재기관이 중재신청을 접수할 때 미리 예납 받은 후 중재판정에 따라 정산하여 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는 상사중재규칙에서 중재요금, 경비 및 수당을 중재의 신청과 동시에 사무국이 지정하는 통화로 예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예납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무국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⁵⁹⁾ 만약 지정 통화가 외화일 경우에는 사무국은 예납액을 신청 접수당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다.⁶⁰⁾

중재절차의 진행상 중재비용의 예납은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한 뒤 중재원이 이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 만약 예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중재원의 판단에 의한 추가예납의 요구시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수 있다.⁶¹⁾

사무국은 이러한 예납금 전액을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방법과 양당사자간에 균등배분 시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재의 형평과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중재의 장점과 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⁶²⁾ 한국에서는 중재비용의 예납과 관련하여 중재의 신청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⁶³⁾ 예납된 중재비용의 최종 정산은 심문이 종결되고 판정문이 작성되었을 때 중재사무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때 사무국은 예납액의 수지계산서와 정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정산잔액을 반환한다.

58) Michael Buhler, Costs in ICC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 n. p.143 (1992).

59)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5조.

60) 우리 나라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제15조.

61)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5조.

62) 신한동, 상사중재실무, 신영사, p.189, 1998.

63)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5조.

2. ICC

ICC의 중재에서도 중재절차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금액을 근거로 한 일정액의 중재비용을 예납할 것을 요구한다.⁶⁴⁾ 피청구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양당사자간에 균등하게 예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반대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모든 중재절차상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⁶⁵⁾ 중재사안이 너무 복잡하여 중재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납비용은 ICC의 표준수수료율에 따라서 중재법원에 의하여 확정이 된다.⁶⁶⁾ 중재신청서의 접수와 중재절차의 개시사이의 시점에서 ICC의 중재법원은 예납중재비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여타의 기관중재의 경우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⁶⁷⁾

이와 같이 예납되는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까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즉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⁶⁸⁾ 그러나 신청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재비용의 변동이나, 신청금액에 대하여 중재기간중 발생한 이자로 인한 예납중재비용의 변동에 관하여는 그 증액이나 감액분을 인정하지 않는다.⁶⁹⁾ 이와 같이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예납비용은 변동할 수 있으며, 이는 ICC 중재에서도 예납비용은 모든 중재절차가 종료되고 난 뒤에 최종 확정됨을 시사한다.

ICC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반대신청이나 복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중재신청에 대한 예납비용의 절반은 양당사자가 균등 부담한다.⁷⁰⁾ 이러한 균등부담원칙은 1986년 이래로 양당사자가 중재의 신청시 예납비용을 납부하는데 매우 소극적임으로 인해 많은 중재절차가 지체되어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중재절차의 신속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관련 당사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⁷¹⁾ 따라서 개정된 ICC 중재규칙(1998)에서는 사무국이 중재절차를 속개시키기 위한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여 반드시 전체 예납금액의 절반에 못미치는 금액이라도 중재절차의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최초균등예납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⁷²⁾ 그러나 이것은 법원사무국에게 이러한 최초납입금액에 대한 지정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최초예납금지정이 중재사안의 특성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에 의하여 예납비용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였다.⁷³⁾

ICC 중재법원에 의하여 예납중재비용이 결정되면 법원사무국은 양당사자들에게 각자가

64)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30(1).

65) Christian Buhning, op. cit., p120.

66) Buhler, op. cit., p.116.

67) Craig, et. al., op. cit., p.163.

68) 실제로 예납중재비용의 감액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Reiner, op. cit., 156-157.

69) Michael Buhler, op. cit., p.146.

70) Michael Buhler, op. cit., p146.

71) Michael Buhler, op. cit., p146.

72)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30(1).

73) Craig, et. al., op. cit., p.163.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납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당사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유예기간으로서 최소한 15일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당사자들은 이 유예기간을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⁷⁴⁾ 예납중재비용의 절반이 수납되면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대로 중재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송부하게 된다.

또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ICC 중재법원에 의해 결정된 예납중재비용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지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소 15일의 유예기간으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으면 사무국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심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중재신청이나 반대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⁷⁵⁾ 실제에 있어서는 약 한달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최종 유예기간을 결정하는데도 보통 수개월씩 지체한다.⁷⁶⁾ 일반적인 관행상 유예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납비용납부의 지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미납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유예기간을 발동하게 된다.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만약 예납비용미납으로 인하여 중재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단지 새로운 중재신청에 의해서만 재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예기간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이미 취소된 중재신청 건을 동일 중재신청으로 간주하여 재심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V. 한국과 ICC 간 중재비용의 비교

이 장에서는 이전에서 살펴본 한국과 ICC중재법원에서의 중재의 비용구조, 중재비용의 부담 및 중재비용의 예납에 관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 및 상이점을 밝혀보고 또한 양자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중재비용구조

중재비용구조의 근본적 골격은 한국과 ICC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ICC중재법원에서는 중재비용을 크게 중재절차상의 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뉘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중재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다음절에서 논의될 중재비용의 부담과 중재비용의 예납에 관한 중재기관과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보았다. 중재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중재의 본질적 비용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의 비

74) Craig et. al., op. cit., p.147.

75)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30(4).

76) Michael Buhler, op. cit., p.149.

용분배에 있어 당해 중재 사안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중요한 결정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재본안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7:3의 비율로 과실책임을 물을 경우에 중재절차상의 비용도 역시 7:3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비용의 부담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당사자비용은 전략적 중재비용으로서 패소의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재절차상비용의 세부항목에서는 한국과 ICC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중재절차상비용을 요금, 경비, 수당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ICC에서는 중재인비용, 관리비용, 전문가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한국과 ICC의 분류방식에 따른 각각의 비용들을 성격의 유사성에 따라 대비시키고 각 비용들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1> 우리 나라와 ICC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상비용의 구성항목비교

우리 나라의 상사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p>요금 :관리요금 및 심문요금</p>	<p>관리비용(administrative costs) :중재인의 업무상 비용, 중재서기의 보수 및 경비, 심문장소시설비, 통역비, 제 증명서발급비용 등</p>
<p>수당 :중재인수당</p>	<p>중재인비용(arbitrators' fee and expenses) :중재인수수료, 중재인경비</p>
<p>경비 :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p>	<p>전문가비용(fees and expenses of any neutral experts) :전문가수수료, 전문가경비</p>

위의 표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구성항목을 한국과 ICC의 중재규칙상에서 서로 대비시켜 보았는데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대체로 구성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항목이 포괄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이라고 했을 경우 관

리요금과 심문요금 두 가지로서 파악되고 있지만 ICC의 경우에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인의 업무상 비용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비’와 ICC의 ‘전문가비용’을 대비시킬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경비’에 대한 적용범위가 ‘전문가비용’보다도 더욱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수당’과 ‘중재인비용’의 경우 ICC의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경비까지 중재인 비용에 포함시킴으로서 우리 나라의 ‘수당’보다는 약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재원과 중재판정부가 어떤 중재사안을 심리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개념에서 우리 나라와 ICC의 중재비용에 관한 규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부항목의 분류와 구성에 있어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2. 중재비용분담

우리 나라나 ICC의 중재법원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의 비용분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중재비용도 소송비용에서와 같이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서 판정결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재비용의 분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판정요지의 첨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재비용분담에 관한 우리 나라와 ICC간의 규정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재비용분담에 관한 명문상의 규정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와 ICC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결정하도록 당사중재규칙상에 표기하고 있고 중재판정부가 그 부담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⁷⁷⁾ ICC중재규칙상에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⁷⁸⁾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한 결정을 중재판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ICC의 경우에는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당사자비용은 ‘전략적 중재비용’으로 파악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당사자부담원칙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나 ICC의 중재법원에서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재비용예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납중재비용의 당사자간의 분배에 있어서 한국과 ICC간에 동일하

77)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1조.

78)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Art. 31(3).

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중재의 신청인이 예납비용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⁷⁹⁾ ICC에서는 피신청인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양당사자간에 균등하게 예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⁸⁰⁾ 이러한 양 규정에 있어서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에 이미 피신청인의 예납비용분담에 관한 거부를 함축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의 예납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양당사자간에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중재에서와⁸¹⁾ 달리 ICC중재에 있어서는 중재신청서의 접수와 중재절차의 개시사이의 시점에서 중재법원이 예납중재비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는 양당사자가 예납중재비용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의 심각한 지연요인으로 파악된다. ICC중재가 여타의 기관중재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판은 이러한 중재절차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ICC중재에 있어서 중재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재비용은 당사자간에 어떻게 분담되는 가, 그리고 중재비용의 예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양 중재시스템에서 이러한 주제별 비교는 우리 나라와 ICC간 중재비용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와 장단점을 가늠케 하였는데, 이런 점들을 주제별로 정리해봄으로서 결론을 맺고자한다.

중재비용의 대분류에서는 한국과 ICC간에 공히 중재절차상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대별됨으로서 동일하였으나 중재절차상비용의 세부항목에서는 적용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상사중재규칙상 요금이나 ICC중재규칙상의 관리비용은 모두 중재원에서 제시된 표에 의하여 산출되는데 세부항목의 적용범위의 상위는 이러한 산출표준의 단위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 중재인수당은 ICC중재에서의 중재인비용보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중재인수당을 계산하는 산출표준의 단위도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재인수당이 ICC보다 낮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중재비용의 절감효과를 줄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는 종국적으로 중재판정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ICC 및 여타의 국제중재기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재인수당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79)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5조.

80) Christian Buhning, op. cit., p.120.

81) 우리 나라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할 때 예납중재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상사중재규칙 제65조.

중재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한국과 ICC중재에서 공히 판정결과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재비용분담의 결정을 중재판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만약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분담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균등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ICC중재에서는 중재비용분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중재판정부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판정부는 분담비율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데, 만약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서 분담비율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중재비용이 예납될 때 균등부담원칙에 따라서 납부되었기 때문에 균등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지지만 당사자간에는 상당한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당사자비용의 경우에는 양 중재시스템 모두 각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중재비용의 예납은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재신청의 접수 시 예납중재비용을 징수하고 바로 중재절차를 개시함으로써 함으로서 전체 중재시간의 지연이 없는 반면 ICC의 경우에는 중재신청서 접수 후로부터 중재절차 개시까지 예납중재비용의 결정과 징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당사자가 예납중재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중재신청서가 접수되고서도 중재절차의 개시가 불가능하여 상당한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중재의 신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중재시스템이 낫다고 할 수 있겠다.

중재비용과 관련한 이 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분석은 무역분쟁 당사자의 중재기관의 선정 시 중재절차의 신속성의 확보와 중재비용의 절감의 노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Costs in Arbitration between Korea and ICC

Choong Lyong Ha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mo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and frequently chosen organizations to which international claimants have resorted, when they were confronted with international disputes. In this paper, costs in the ICC arbitration are compared with those in the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seeking efficient ways to reduce the costs while maximizing the quality of arbitral awards. Three main points about costs in the ICC arbitration and the KCAB arbitration are discussed and analysed, First, the cost structures are analysed and decomposed into manageable units. Second, the cost allocation is discussed to clarify its proportional responsibility among the arbitration parties. Third, how advances in arbitration costs are conducted is examined to explore a well established procedure of arbitration.

In conclusion, the KCAB arbitration procedure has been found faster and cheaper than the ICC arbitration procedure in terms of time and costs, respectively. However, it can be cautiously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arbitral awards made by the KCAB is not necessarily higher than that made by the ICC.

참고문헌

상사중재규칙.

상사중재사무처리규정.

신한동, 상사중재실무, 신영사, 1998.

이순우, 상사중재론, 1998.

Alan Redfern and Martin Hunter, Law and Practices of Commerical Arbitration 248-255, 1991;

Christian Buhning-Uhle,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Kluwer Law International, p.113-114, 1998.

Craig, W., W. Park and J. Paulsson, Annotated Guide to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OCEANA PUBLICATIONS, IN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171. 1998.

Michael Buhler, Costs in Arbitra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3 p.123. 1992.

Michael J. Mustill and Stewart C. Boyd,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England, 394-403, 1989.

The 1998 ICC Arbitration Rules.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1981.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1982.

Year Book of Commercial Arbitration, 1984.